

2023년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수정공고

『2023년도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』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5월 11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- 주의 사항 -

1. 내역사업별 신청·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내역사업	내내역사업	구분	공고	신청·접수	선정평가	협약
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	구매연계형	자유공모1차	‘23. 1월	1~2월	2~3월	4월
		자유공모2차	‘23. 4월	4~5월	5~6월	7월
		지정공모1차	‘23. 2월	2~3월	3~4월	4월
		지정공모2차	‘23. 5월	5~6월	6~7월	7월
		지정공모3차 (창경센터 추천)	‘23. 7월	7~8월	8~9월	10월
	공동투자형	자유공모1차	‘23. 1월	1~2월	2~3월	4월
		자유공모2차	‘23. 4월	4~5월	5~6월	7월
		자유공모3차	‘23. 7월	7~8월	8~9월	10월
		지정공모1차	‘23. 2월	2~3월	3~4월	4월
		지정공모2차	‘23. 5월	5~6월	6~7월	7월
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	네트워크형	R&BD	‘23. 5월	5~6월	7월	9월

2. 2023년도에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구매연계형 과제(국내수요처)의 경우 수요처-중소기업 간 신규 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정공모 과제를 확대하고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.
3. 구매연계형의 지원분야는 일반과제, 조달혁신, 소부장이며, 일반과제에 해외 수요처·서비스R&D·원전 등 전략과제가 포함됩니다.
공동투자형의 지원분야는 일반과제, 소부장이며, 일반과제에 서비스 R&D·원전 등 전략과제가 포함됩니다.
4. 신청자격 서류, 가점 중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(수정)제출이 불가 하오니,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

구 분	시행 계획 변경 사항																	
	'22년도	'23년도																
지원분야 (품목)	■ 중소기업기술로드맵 기반의 중소기업 적합 지원분야(품목) 적용 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분야 및 품목</td></tr><tr><td>소·부·장</td><td>9대분야, 104개 품목</td></tr></table>	구분	분야 및 품목	소·부·장	9대분야, 104개 품목	■ 중소기업 적합 유망분야(품목) 도출을 통한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면 개편 <table><tr><td>구분</td><td>분야 및 품목</td></tr><tr><td>소·부·장</td><td>9대분야, 113개 품목</td></tr></table>	구분	분야 및 품목	소·부·장	9대분야, 113개 품목								
구분	분야 및 품목																	
소·부·장	9대분야, 104개 품목																	
구분	분야 및 품목																	
소·부·장	9대분야, 113개 품목																	
사업개편	■ 조달혁신·소부장 분야 중점지원 ■ 주관-수요처 간 특수관계 여부 확인 ■ 자유공모 과제 위주의 지원 ■ 네트워크 기획연계-직접신청 별도 지원 <table><tr><td rowspan="2">구매 조건부</td><td>구매연계형</td><td>일반, 조달혁신, 소부장</td></tr><tr><td>공동투자형</td><td>일반, BIG3, 소부장</td></tr><tr><td>네트 워크형</td><td colspan="2">네트워크 기획, R&BD</td></tr></table>	구매 조건부	구매연계형	일반, 조달혁신, 소부장	공동투자형	일반, BIG3, 소부장	네트 워크형	네트워크 기획, R&BD		■ 신규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정공모 우선 지원 ■ 해외수요처를 대상으로 하는 협력 R&D를 강화 ■ 상생 협력 기반의 서비스 R&D 지원 ■ 네트워크 기획을 R&BD에 포함하여 지원 <table><tr><td rowspan="2">구매 조건부</td><td>구매연계형</td><td>일반(해외수요, 원전, 서비스 포함), 조달혁신, 소부장</td></tr><tr><td>공동투자형</td><td>일반(원전), 서비스, 소부장</td></tr><tr><td>네트 워크형</td><td colspan="2">R&BD(네트워크 기획 포함)</td></tr></table>	구매 조건부	구매연계형	일반(해외수요, 원전, 서비스 포함), 조달혁신, 소부장	공동투자형	일반(원전), 서비스, 소부장	네트 워크형	R&BD(네트워크 기획 포함)	
구매 조건부	구매연계형		일반, 조달혁신, 소부장															
	공동투자형	일반, BIG3, 소부장																
네트 워크형	네트워크 기획, R&BD																	
구매 조건부	구매연계형	일반(해외수요, 원전, 서비스 포함), 조달혁신, 소부장																
	공동투자형	일반(원전), 서비스, 소부장																
네트 워크형	R&BD(네트워크 기획 포함)																	
전략적 지원	■ 전략분야 지원 - 조달혁신 - 소·부·장 - BIG3 - 원전 지원 신설	■ 전략분야 지원 - 지정공모 우선 지원 - 서비스 분야 신설 - 해외수요처 과제 확대 - 대기업 수요처 과제발굴(창경센터 추천)																
접수시기	■ 1월(상반기), 4월(하반기) - 공동투자형의 경우 자유공모 3차(7월), 4차(10월) 추가 진행	■ 1월(상반기), 4월(하반기) - 공동투자형의 경우 자유공모 3차(7월) ※ 단, 전략과제의 경우 정책에 따라 하반기 1~2회 추가공고 가능																
신청가능 횟수	■ 당해 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일차수에 내역사업별 1개 세부과제만 신청 가능 ■ 연간 동시 수행가능 과제 2개	■ 당해 연도 내역사업별 신청제한 폐지 ■ 연간 동시 수행가능 과제 제한 폐지																
기타사항	■ (관리시스템)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SMTECH) 활용 * 과제접수, 협약, 과제관리 등	■ (관리시스템) 구매조건부, 네트워크형 과제는 기존 SMTECH 활용 * 과제접수, 협약, 과제관리 등																
	■ 수요처(중소기업) 업종 제한 : 제조업	■ 수요처(중소기업) 업종 제한 폐지 : 전 업종 가능																

2. `23년 지원내용

□ 사업목적

- (구매조건부)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수요기반 R&D를 지원하여 가치(공급)사슬의 경쟁력 확보
- (네트워크형) 기업 간의 협력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&D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

□ 지원규모

- (구매조건부) 신규 1,098억원, 687개 과제 지원
- (네트워크형) 신규 21억원, 20개 과제 지원

< `23년 지원규모 및 일정 >

내역사업	구분	상반기	하반기	계
구매연계형	예산	44,563백만원	38,768백만원	83,331백만원
	과제수	248개	304개	552개
공동투자형	예산	15,600백만원	10,850백만원	26,450백만원
	과제수	66개	69개	135개
네트워크형	예산	-	2,100백만원	2,100백만원
	과제수	-	20개	20개

[참고]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·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

□ (지원조건) 제출서류, 과제 및 수요처 유형을 기준으로 공모방식과 민간부담 비중 차등 운영

* 내역사업별 지원한도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세부 공고 확인

구 분				지원규모	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*			지원대상	공모 방식
					정부	주관	수요처/ 투자기업	수요처/ 투자기업	
구매연계형	일반 과제	국내 수요처	구매 동의서	최대 2년, 5억원	65% 이내	15% 이상	20% 이상	대중견기업 중소기업	지정공모, 자유공모
		해외 수요처		65% 이내	35% 이상	-	외국정부, 국제기구		
	조달 혁신	최대 2년, 10억원		65% 이내	15% 이상	20% 이상	공공기관		
		65% 이내		35% 이상	-	정부, 지자체			
	소부장	최대 2년, 5억원		65% 이내	15% 이상	20% 이상	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		
		65% 이내		35% 이상	-	정부, 지자체			
	일반 과제	국내 수요처	구매 계약서	최대 2년, 5억원	65% 이내	35% 이상	-	대중견기업 중소기업, 외국기업, 외국정부, 국제기구	
		해외 수요처							
	조달 혁신	최대 2년, 10억원		65% 이내	35% 이상	-	공공기관, 정부, 지자체		
	소부장	최대 2년, 5억원		65% 이내	35% 이상	-	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정부, 지자체		
공동 투자 형	일반과제 서비스 소부장	투자 동의서	최대 3년 12억원	65% 이내	35% 이상 (현금 60% 이상)	정부출연금 대응 투자(1:1)	대기업 공공기관 등	지정공모, 자유공모	
				65% 이내	35% 이상 (현금 60% 이상)	정부출연금 대응 투자(3:2)	중견기업		
네트 워크 형	R&BD (네트워크 기획** 포함)			최대 2년, 6억원	65% 이내	-	-	-	자유공모

*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「코로나-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(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-11호 '23.02.14.)」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율은 80%까지 가능

** '23년은 네트워크형 R&BD 내에 네트워크 기획을 포함하여 진행

3. 신청자격 등

□ (공통 자격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

□ (세부과제별 자격)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 상이

내역사업	지원대상 및 조건
구매연계형	- 수요처의 '구매계약서' 또는 '구매동의서'를 받은 중소기업 *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(중소기업)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- 수요처 기준 1) 국내수요처 ① 공공부문 : 정부, 지자체 및 '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'에 의한 공공기관 ② 민간부문 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(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 포함) - 중소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 후 5년 초과, 직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, 크레딧 신용등급 BB(bb-) 이상인 기업 ③ 기타부문 :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, 단체, 병원 등 2) 해외수요처 - 외국정부, 국제기구, 외국기업, 해외 도·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 * 기업의 경우,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(외국정부, 국제기구는 예외)
공동투자형	- 투자기업의 '투자동의서'를 받은 중소기업 *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(중소기업)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- 투자기업 자격 :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투자 기술개발 자금을 출연하는 대기업,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< 구매조건부(공동투자형) 투자기업 참여현황(68개사, '23.3월말 기준) > ■ (대기업, 18개사) 포스코, 르노코리아자동차, 삼성디스플레이, 삼성전기, 삼성SDI, 삼성전자, 한화에어로스페이스, NS쇼핑, LG전자, 현대자동차, 기아, KT, KCC건설, 네이버, 한화시스템, 현대퓨처넷, 현대바이오랜드, 카카오페이 ■ (중견기업, 25개사) 한솔테크닉스, 주성엔지니어링, 인성정보, 경창산업, 티와이엠, 휴맥스, 오텍캐리어, 아진산업, 디아이씨, 톱텍, 세하, SFA반도체, JW홀딩스, 아모레퍼시픽, 삼지전자, 탑엔지니어링, JW바이오사이언스, 라이온캠텍, 아세아텍, 남양넥스모, 토비스, 삼화페인트공업, 에스지이, 대한뉴팜, 대상 ■ (공공기관, 25개사) 한국전력공사, 한국동서발전, 한국서부발전, 한국남동발전, 한국남부발전, 한국중부발전, 한국수력원자력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가스공사, 한국지역난방공사, 국가철도공단, 인천항만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석유공사, 한국철도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국토정보공사, 부산항만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가스기술공사, 한국조폐공사, 한전KDN, 에스알, 도로교통공단, 여수광양항만공사 * 투자기업 현황은 추가협약 또는 기간 만료 등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** 신규 투자기업 참여는 투자기업 관리기관에 절차 확인 및 기간내 협약필요☎02-368-8750 *** (중소기업 기술제안) 상생누리(https://www.winwinnuri.or.kr) : 메인페이지 → 상생정보통 → 개방형 상생협력 안내 → 기업명 "투자기업명" 검색 → 보기창 클릭

내역사업	지원대상 및 조건
네트워크형	- 혁신형 중소기업* 중심의 3개 이상 기업의 네트워크 * (주관연구개발기관) 벤처, 이노비즈,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(공동연구개발기관) 중소기업 (네트워크 기획지원전담기관) 전문기관 지정 기획운영기관(중소기업융합중앙회)

- ☐ (신청자격의 검토·확인) 참여제한, 의무사항 불이행, 부채비율, 중복성 등 지원제외 조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입력정보와 신청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,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
 - * 선정(협약)된 이후,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(협약체결 여부)와 관계없이 지원제외(협약해약)로 처리
- ☐ (신청 및 지원 제외사항) [붙임] 참고

4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◇ 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 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 서식은 공고가 게시된 시스템에 업로드 예정

☐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

○ 신청·접수기간

- (상반기, 4월 지원과제) '23년 1월 26일(목) ~ 2월 28일(화), 18:00까지
- * 대상사업 : 구매조건부(구매연계형, 공동투자형)
- (하반기, 7월 지원과제) '23년 4월 4일(화) ~ 5월 4일(목), 18:00까지
- * 대상사업 : 구매조건부(구매연계형, 공동투자형)
- * 공동투자형(자유공모 3차, 10월 지원과제) 과제는 7월초 공고예정
- (하반기, 9월 지원과제) '23년 5월 11일(목) ~ 6월 15일(목), 18:00까지
- * 대상사업 :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(R&BD)

<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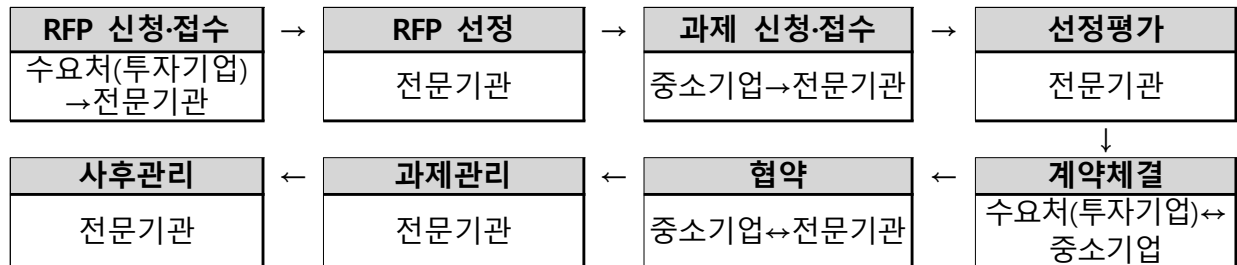
- ☞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(구매연계형 및 공동투자형) 및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과제는 종합관리시스템(SMTECH)을 통해 접수 예정
- ☞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~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
- *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
- ☞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·접수에 유의하기 바람
- *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, 보완 등이 허용되나, 18시 이후,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
- ☞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:00 까지

☐ (신청방법 및 구비서류) 내역사업별 세부과제 [붙임] 참고

5. 추진절차

- ☞ 평가, 선정,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- ☞ 세부과제별로 추진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

○ 지정공모(구매연계형 및 공동투자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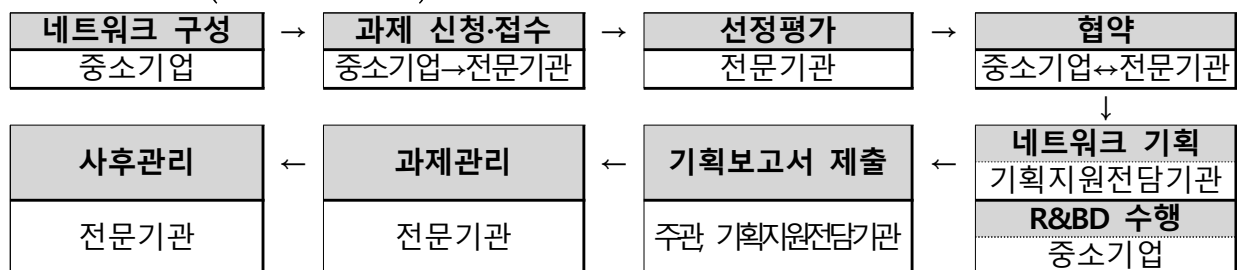


*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○ 자유공모(구매연계형 및 공동투자형)



○ 자유공모(네트워크형)



6. 기술료 징수기준

□ R&D 기술료 징수기준

- (납부대상) 최종평가 “완료”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,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(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)
- (납부방식) 연구개발 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(매출기반 약정기술료)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,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「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」에 따라 징수

☞ 경상기술료(매출기반 약정기술료)

-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(사업화)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(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)의 일정비율로 납부
-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,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,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

*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(www.smtech.go.kr) >> 고객지원 >> 이용매뉴얼 >> 시스템 이용매뉴얼 >> 8. 기술료 참고

7.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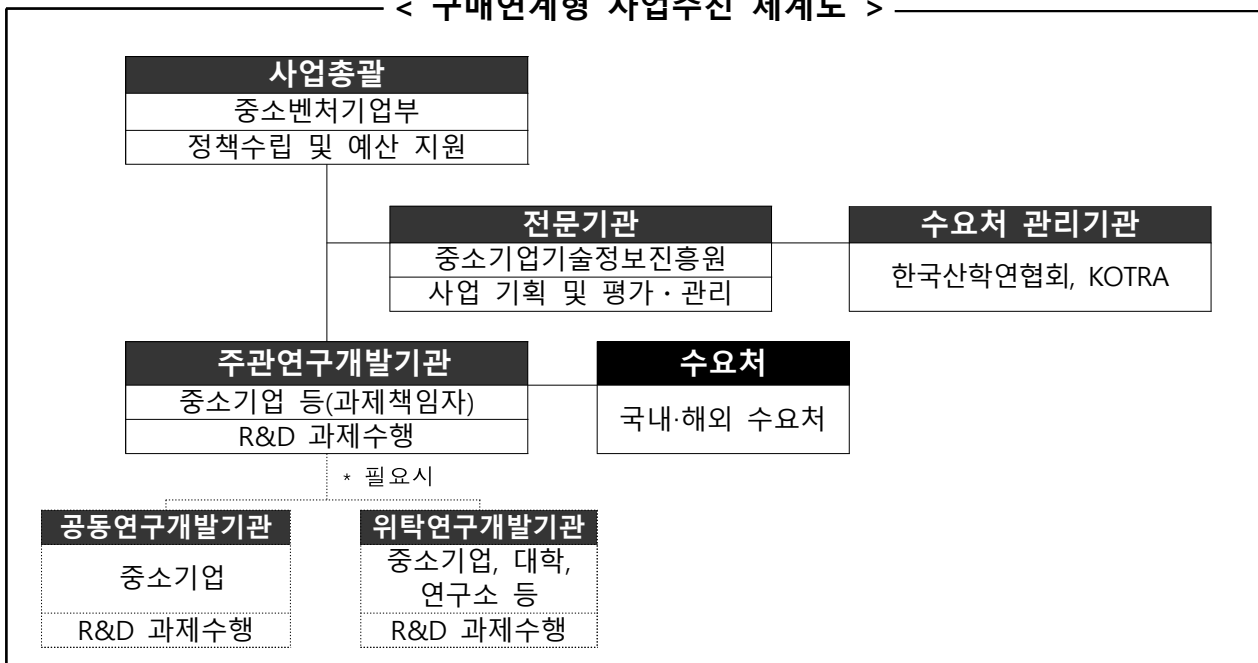
□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

-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관련 행정규칙,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
-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
-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
-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(구매조건부·네트워크형) 관리지침
-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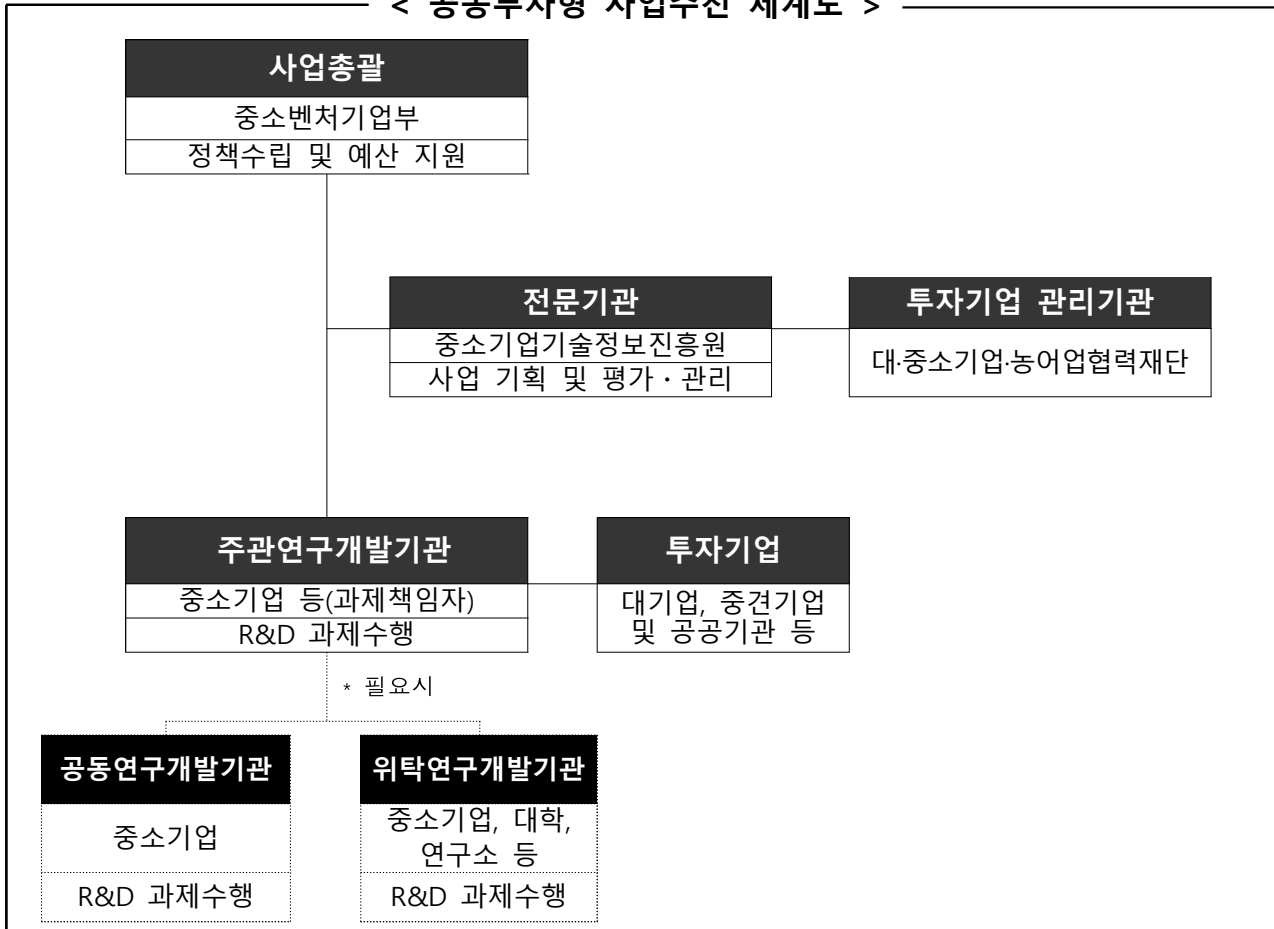
*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

□ 추진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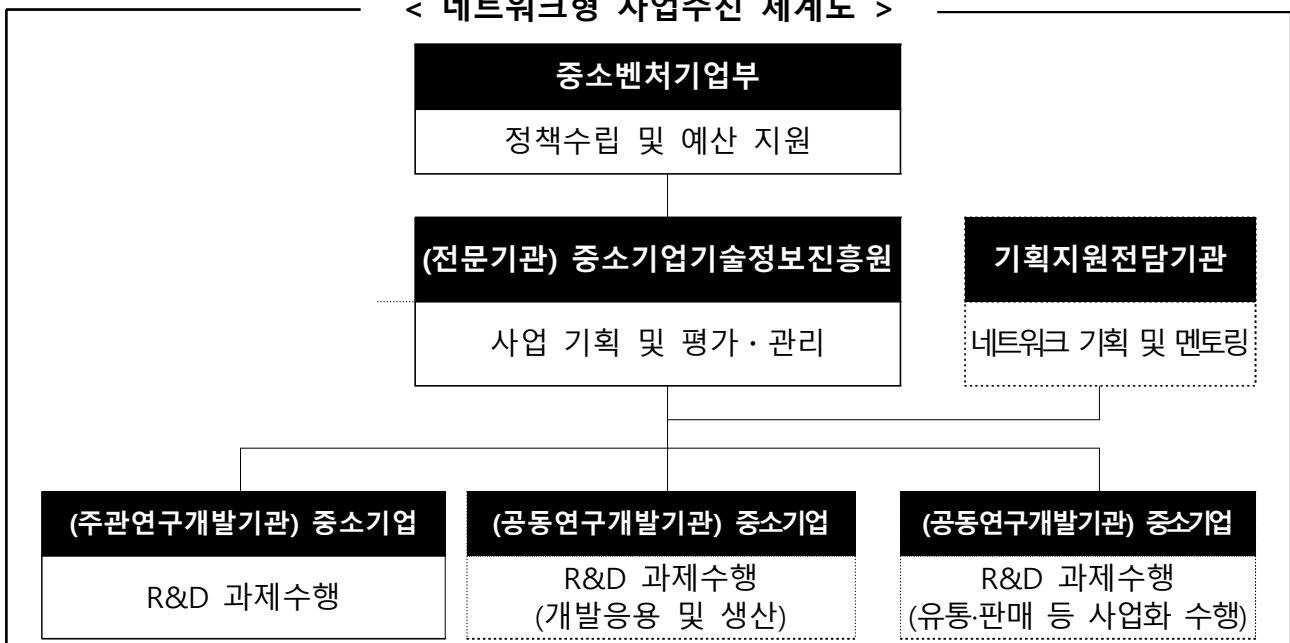
< 구매연계형 사업추진 체계도 >



< 공동투자형 사업추진 체계도 >



< 네트워크형 사업추진 체계도 >



8. 문의처

□ 사업안내

담당기관(부서)		문의사항	전 화
사업총괄	중소벤처기업부 (기술개발과)	시행계획 수립·총괄	1357
전문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개방형혁신사업실)	신청·접수, 과제평가, 과제관리, 정산·환수 등 사업집행	
수요처 관리기관	한국산학연합회 (연구기반팀)	수요처 관리 등	044-410-3323 044-410-3324
투자기업 관리기관	대·중소기업· 농어업협력재단	투자기업 관리 등	02-368-8750
운영기관	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	대기업 수요처 과제 발굴	02-739-9789
IP-R&D 연계기관	한국특허전략개발원	IP-R&D 전략지원 프로그램	02-3287-4227
기획지원 전담기관	중소기업융합중앙회	네트워크 기획지원 및 멘토링	042-331-0576 042-381-9234

☞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

-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: <http://www.smtech.go.kr>
-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: <http://www.mss.go.kr>
-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: "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" / http://pf.kakao.com/_Ilfqd